

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물이 경제부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⇒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재직한 자
-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⇒ 그 밖에 정치·사회·문화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물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,
- 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 중 행정분야의 학식과 경륜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조례안의 내용에는 ‘행정분야’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 끝.